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상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28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6.

발 의 자 : 이상식·이개호·이정문
임호선·박지혜·양부남
김한규·조정식·복기왕
안도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맨홀 내 질식사고 등 지방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지방출자·출연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.

현행법은 지방출자·출연기관에 대하여 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대, 민간경제 및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의 위축 방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경영에 대한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,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중인 「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」의 법적 근거규정 역시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.

또한 기관장의 경영성과 및 비위행위 등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, 안전경영에 관한 기관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함.

이에 지방출자·출연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여 안전경영 문

화를 확립하고, 현재 운영중인 「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」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,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이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의 대상이 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기관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의 직무정지 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3조제3항 및 제15조의4 신설 등).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15조의2, 제15조의3”을 “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”을 “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”로 한다.

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출자·출연 기관은 경영활동에서 주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2제2항 전단 중 “이 조에서”를 “이 조 및 제15조의4에서”로 한다.

제3장제2절에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4(중대재해 발생 책임) ①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이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의 대상이 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고, 지방자치단

체의 장은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 중대한 위반으로 해당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을 해임할 수 있다.

제2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대재해 발생 책임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·출연기관의 장이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의 대상이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적용 대상 등) ① · ② (생략)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, 제10조의3, 제11조, 제12조, 제14조, 제15조, <u>제15조의2</u> , 제15조의3, 제16조, 제17조, 제17조의2, 제17조의3, 제18조제3항 · 제4항, 제19조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1. ~ 3. (생략)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25 이상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, 제12조, <u>제15조의2</u> 및 <u>제15조의3</u> 을 적용한다. ⑤ (생략)	제2조(적용 대상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제 <u>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15조의2</u> <u>부터 제15조의4까지</u> 를-----. ⑤ (현행과 같음)
제3조(경영의 기본원칙) ① ·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조(경영의 기본원칙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출자·출연 기관은 경영활</u>

	<u>동에서 주민과 종사자의 생명 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 여야 한다.</u>
제15조의2(비위행위자에 대한 조 치) ① (생 략)	제15조의2(비위행위자에 대한 조 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 ·출연 기관의 임원이 금품비 위, 성범죄, 채용비위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(이 하 “비위행위”라 한다)를 한 사 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 에 대하여 검찰, 경찰 등 수사 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(이 하 이 조에서 “수사기관등”이 라 한다)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기관 의 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 을 요구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이 조 및 제15조의4에서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~ ⑥ (생 략) <u><신 설></u>	③ ~ ⑥ (현행과 같음) 제15조의4(중대재해 발생 책임) ①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이

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의 대상이 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 중대한 위반으로 해당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을 해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을 해임할 수 있다.

제27조(운영지침의 통보)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·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,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7조(운영지침의 통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4.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</u>
---	--